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4.

발 의 자 : 서지영 · 이현승 · 고동진
조승환 · 서천호 · 김미애
곽규택 · 박충권 · 성일종
나경원 · 이성권 · 김민전
최수진 · 김대식 · 박성훈
조정훈 · 김도읍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·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,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,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입학한 자의 상급 학위와 입학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

생하였으므로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고, 학위 취소로 인하여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).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운영에”를 “운영, 제3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”로 한다.

- ③ 대학원의 입학·수료, 학위의 수여 및 취소 등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

제34조의6 중 “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2. 제33조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학위 수여의 취소 등) ① 대학의 장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기술대학·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, 각종학교를 포함하되,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학위(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)를 수여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위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
2.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
3. 본인이 학위 수여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4.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(명예박사 학위에 한정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학위의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: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
2. 제1호 외의 학위: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

③ 제1항에 따라 학위가 취소된 경우 그 학위를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가 취소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취소된 해당 학위 외에 다른 유효한 학위를 함께 활용하여 상급 학위 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

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급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학위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상급 학위를 수여(상급학교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대학의 장은 해당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학위 수여의 취소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그 밖에 학위 수여 취소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위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대학원) ① ·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, 연구과정 및 그 <u>운영에</u>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34조의6(입학허가의 취소)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허가를 한 학생이 <u>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</u>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</p>	<p>제29조(대학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대학원의 입학·수료, 학위의 수여 및 취소 등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<u>운영, 제3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</u>----- -----.</p> <p>제34조의6(입학허가의 취소) ---- ----- ----- 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----- -----.</p> <p>1. <u>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
2. 제33조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3.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

제35조의2(학위 수여의 취소 등)

① 대학의 장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기술대학·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, 각종학교를 포함하되,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상급 학위과정에서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학위(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)를 수여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위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

은 경우

2.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
입학한 경우

3. 본인이 학위 수여의 취소를
요청하는 경우

4.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
우(명예박사 학위에 한정하
다)

② 제1항에 따라 학위의 수여
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
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: 제29
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

2. 제1호 외의 학위: 학칙으로
정하는 위원회

③ 제1항에 따라 학위가 취소
된 경우 그 학위를 입학자격
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
위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
쳐 해당 학위가 취소된 날 취
소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취소
된 해당 학위 외에 다른 유효
한 학위를 함께 활용하여 상급
학위 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
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

거쳐 그 상급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학위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상급 학위를 수여(상급학교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대학의 장은 해당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학위 수여의 취소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그 밖에 학위 수여 취소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